

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4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,
- 나.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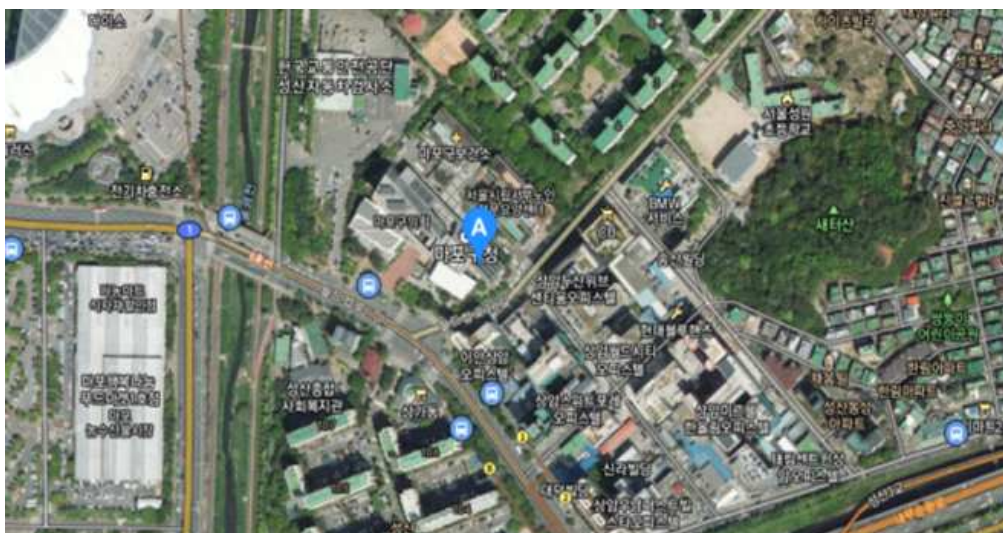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아울러, 소규모센터 재구조화를 통하여 종합·총괄기능을 갖춘 1개 대표 센터와 5개 부서단위 운영으로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-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·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
-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 재 지 :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, 1층
- 시설규모 : 200.52 m^2
-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※ 5개분소 : 강서·강북·광진분소(25.7.1.), 보라매·창동분소(26.7.1.)

마. 민간위탁기간: 3년(2025.7.1.~2028.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·선정(신규위탁)
 - 신규위탁 사유: 종합·총괄기능을 갖춘 대표센터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체계화와 전문성 강화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3,307백만원('25년) ※ 2025년 추진: 대표센터 1, 분소 3개소
- 산출근거
 - 인건비 2,350백만원, 운영비 158백만원, 사업비 799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|
|--|
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관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|
|---|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|
|---|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| |
|---|
| <p>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</p> |
|---|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정화 (☎ 2133-4117)